

■ 최신 판례 ■

[지적재산권]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사용료의 범위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1. 판결의 요지

이동통신사업자인 甲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甲회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甲회사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실관계

이동통신회사인 피고는 2002년 3월경부터 '컬러링'이라는 이름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원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피고는 2009년 1월부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2008. 2. 28.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되,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매출액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합의').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는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의 전송사용료에 관하여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 및 휴대폰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X 9% X 음악저작권관리비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징수규정 제23조 비고2)는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

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원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사건 매출액 정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한 자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월 900원을 내고, 통화연결음으로 사용될 음원을 구매할 때 1회 정보이용료로 700원 또는 1,4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 정보이용료 이외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출액 정의가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가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는 정보이용료 이외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출액 정의 중 '당해 서비스 사이트'는 그 문언상의 의미대로 '콘텐츠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 등의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은 'CP 등이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전송한 대가로 받은 정보이용료 수입'만을 의미하며, '광고 기타의 수입'은 'CP 등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 기타 수입'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전송' 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 사건 매출액 정의상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전송사용료는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직접 음악저작물을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저작권 사용료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상 '전송'이라 함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송신을 포함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는 등으로 음악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하고, 피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산출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통화연결음과 관련해서는, "먼저 음반제작사 등이 최초로 만든 마스터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CP가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와 형식의 음원으로 가공하고, 가공된 음원은 CP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 되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받고 판매되며, 판매된 음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음원저장서버에 저장되었다가, 이후 발신자가 전화를 걸면 저장된 음원이 음성통화 시 이용되는 통신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전달되는 방법으로 전송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 중 CP 등이 가공된 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되므로 그로써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후 저장된 음원을 음원저장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설비를 단순히 설치·관리·운영하는 피고가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통화연결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음원저장서버, 가입자정보 관리서버 및 통신망의 이용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2년경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였던 피고는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투자비, 간접경비,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상수입 등 근거 자료를 첨부·신청하여, 정보통신부로부터 통화연결음을 전달하여 주는 이 사건 서비스를 통신역

무로 보아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만 하고 별도로 CP가 가공한 음원 등 콘텐츠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음원저장서버에 저장된 저작권 없는 음원이 통화연결음으로 발신자에게 전달되므로, 이동전화 가입자는 피고에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기 전 원고는 CP 등과 "CP 등이 원고의 관리저작물을 피고의 컬러링 서비스에 제공함을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아닌 CP 등을 음악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로 보아 왔고, 당시 적용되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2006. 7. 14. 개정된 것)상 '매출액 정의'가 이 사건 매출액 정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료로 분배받지 아니하였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01483 판결](#)